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1
----------	-----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의의원 : 김영실, 박경원, 김상수
이진환, 이정애, 박윤옥
김동훈, 원주영, 한송연
김지훈(국), 김지훈(민)
이상기, 손정자, 이수련

1. 제안 이유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며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의3)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5조에 따라 시장이”를 “제55조12호에 따라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구두수선대”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2조의3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허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로판매대, <u>구두수선대</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선정한다.</p> <p>1.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p> <p>2.·3. (생략)</p>	<p>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 제55조12호에 따라 조례로 -----</p> <p>-----</p> <p>-----</p> <p>1. ----- <u>구두수선대</u>-----</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u><삭 제></u></p> <p>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2조의3(도로점용허가 대상자)제2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자는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자 중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의한 장애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에 해당없음.

4. 작성자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